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

동의자 (배우자)	성　　명		생년월일	
	직　　급		직장명 및 연락처	(☎　　)
	수당 동의여부[3]	• 가족수당:	기관성격[2]	

1) **작성대상**: 배우자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공무원·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·사립학교 교직원·별정우체국 직원·공공기관 직원·지방공사 직원·지방공단 직원·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**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

2) **기관성격**: 공무원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사립학교, 별정우체국, 공공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국립학교 등으로 기재

3) **수당 동의여부**: 해당 수당명에 ○, ×로 기재

본인은 가족수당 수령을 포기하고, 「(지방)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동의자　성명　　(인)

※ (인)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.